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8
----------	----

2014년 9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5일
-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4년 9월 2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변화정책관 운영철)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 및 기금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신설 등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 위원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신설(안 제6조제1항제4호)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근거를 신설(안 제6조제3항)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신설(안 제15조제2항제4호)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제6조제1항제4호)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제15조제2항제4호)의 협의회 및 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안 제1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지금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원안 동의
- (3)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정도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 3. 27~4. 16) 결과 :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 영 배)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회구성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 전문가의 위원위촉

(안 제6조제1항제4호, 제6조제3항, 제15조제2항제4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계정(이하 “주민지원계정”이라 함)」 과 「서울특별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하 “환경개선계정”이라 함)」 으로 나뉘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계정마다 「주민지원계정운용협의회」 와 「환경개선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구 분	위 원		위원수
	당연직	위촉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	기후변화정책관(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자치구 국장, 과장 주민지원협의체위원1) 총괄기금관리관(예산담당관)	-	규정 없음
환경개선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기후변화정책관(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서울특별시의원 총괄기금관리관(예산담당관)	환경분야 전문가	위원장 1인 포함 10인이내

- 자원회수시설별 「주민지원계정운용협의회」는 위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현재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살펴볼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참여시켜야 한다는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11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²⁾는 2012년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강화와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음
- 본 조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금 지원 대상 사업의 결정, 수혜자 선정과 같은 심의위원의 주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

1) 강남주민지원협의체(8명), 노원주민지원협의체(13명), 마포주민지원협의체(6명), 양천주민지원협의체(12명)

2)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p.22~24, 2012. 11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개요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2조

- **설치목적**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 **설치년도** : '96. 8. 10

- **운영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재 원** :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타 자치구 특별출연금 등
※ 일반회계 출연금 : '96~'13년 총 1,633억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위원장 포함 11~18인
(자원회수시설별 기금운용협의회 구성)

- **기금조성 현황** ('14. 8.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기금총액	공공예금	정기예금	재정투융자 기금예탁금
31,416	3,706	4,200	23,510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9조

- 설치목적**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 설치년도** : '13. 12. 1

- 운용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재 원** :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1,025억원)과 향후 발생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보상금 세입 한도 내에서 출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 회의개회시 위촉하고 회의 폐회시 자동 해촉

-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 ('14. 8. 31 현재)

(단위 : 백만원)

보상금 총액	2013년			2014년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102,500	20,000	20,000	100	10,000	-	0 (시기 미도래)

※ 조성방법 :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기금 출원(인천시 계좌로 입금)

☞ 서울시가 2013년에 인천시에 지원한 200억원은 현재 인천시에서 대상사업 검토 중 (인천발전연구원)으로 2014.10월 중 대상사업 확정 후 2015년부터 집행 예정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평가대상 조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3-1), 이해충돌가능성(3-3)

□ 현황

-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기금성과분석 등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문제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미흡

- 법정 의무절차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하는 등 심의기능 미흡

※ <참고4>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12.9월) 대상 1,943개 기금 중 1회 이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서면심의 포함)를 거친 기금 수는 1,582개(81.4%), 회의록을 작성한 기금 수는 903개(46.5%)

○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흡

-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

※ <참고5>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 대상 1,943개 기금 중 제척규정을 마련한 기금 수는 98개(5%), 기피규정 마련 기금 수는 33개(1.7%), 회피규정 마련 기금 수는 36개(1.9%)

□ 개선방안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 마련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예시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현 행	개정(안)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으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예시2】 개별기금 설치조례

현 행	개정(안)
(신 설)	<p>제〇〇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p> <p>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p> <p>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p>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4호의 민간전문가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해제된다.

제15조제2항제4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6조제1항 및 제15조 제2항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협의회 구성)①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6조(협의회 구성)①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u>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u></p>
<p>②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제1항 제4호의 민간전문가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된다</p>
<p>제15조(위원회 구성)①~②생략</p> <p>1~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5조(위원회 구성)①~②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u>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p>1. <u>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u></p>

회 행	개 정 안
	<p>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p> <p>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p> <p>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전에서 제척하여야 한다.</p>